

환경부, 한강수계기금 제도개선 합의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수계기금”) 운영 제도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그간 갈등을 빚어 온 물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납입정지 문제를 최종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수계기금 운영에 있어 5개 시·도의 참여 확대와 상·하류 공영정신의 강화에 있다.

우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5개 시·도의 입장이 우선시 되도록 의결요건을 강화하였다.

5개 시·도 2/3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수계위 재적위원(총 9명)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분야를 기존의 부담금 부과율 외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그간 기금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인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토지매수사업에 있어 전체 기금사업 대비 일정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수질오염총량제 지원사업 등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앞으로 수계위 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부담금 납입정지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고 납입정지 3개월 만에 제도개선에 합의한 것은 유역관리 구성원 간에 파트너십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추진은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인천시의 부담금 납입정지가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5개 시·도는 지난 6월 13일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과장급 협의체를 수차례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지난 6월 19일에, 인천시는 6월 25일에 부담금 납입을 재개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거쳐 7월 9일 환경부와 5개 시·도 담당 국장들이 모두 모여 축제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 오종극 물환경정책국장은 “유역관리의 진정한 동력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에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역관리의 새로운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제도개선 내용

제도개선 분야	주요 내용	적용시기
토지매수사업	○ 상한선 : 기금운용액의 20% 이내(수계위 의결로 정함)	2015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상한선 설정 토지매수	○ 구성 : 시·도별 유역관리부정위원장, 상수원관리과장, 유역협력팀 파견 사무관 5명(위원)	2013년 4/4분기부터 (지침 개정)
심의위원회 신설	○ 심의내용 : 연간 매수계획, 분기별 우선순위 선정 등	
수계위원 회의사결정 구조개선	○ 지자체의 입장이 보다 우선시 되도록 5개 시·도 수계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는 분야를 확대 - 기존 부과율을 결정 외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변경, 기금운용지침 및 개발사업지침 제·개정시로 확대 - 다만, 지자체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위원장이 자권으로 결정할 수 있음(단서규정 신설)	2014년부터 (위원회규정 대통령령 개정)
상·하류 협력 증진을 위한 인천시 기금 지원방안 마련	○ 조류주의로 발생기간 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정수비용 지원(2012년 수계실무위 의결사항) ○ 기금운용도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을 추가하여 인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13년, 수계위 의결사항) - 대상사업은 인천시에서 발굴하여 실무위에 제안하고 수계위 의결로 확정	2013년 하반기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
수계위 사무국 조직개편 및 유역협력팀 활성화 방안	○ 5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위의 “한강수계 관리기구의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9월말된 후 개편안 논의) - 단, 추후 논의는 “국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참여” 하는 현행 사무국의 골간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	장기검토
기타 개선사항	○ 환경기초조사사업에 지자체 참여 확대 ○ 수질오염총량제 지원 기금 짐전적 국고 전환	2015년 기금운용 계획부터